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입주자모집공고(정정)



※ 2025년 11월 21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57Pag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항목</th> <th>타입 (약식표기)</th> </tr> </thead> <tbody> <tr> <td>가전/기타</td> <td>열차단필름</td> <td>59A(901동,903동)</td> </tr> </tbody> </table>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열차단필름	59A(901동,903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항목</th> <th>타입 (약식표기)</th> </tr> </thead> <tbody> <tr> <td>가전/기타</td> <td>열차단필름</td> <td>59A(901동,903동 1호라인)</td> </tr> </tbody> </table>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열차단필름	59A(901동,903동 1호라인)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열차단필름	59A(901동,903동)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열차단필름	59A(901동,903동 1호라인)												
57Pag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항목</th> <th>타입 (약식표기)</th> </tr> </thead> <tbody> <tr> <td>가전/기타</td> <td>복합안전방충망</td> <td>59A(901동,903동)</td> </tr> </tbody> </table>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복합안전방충망	59A(901동,903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항목</th> <th>타입 (약식표기)</th> </tr> </thead> <tbody> <tr> <td>가전/기타</td> <td>복합안전방충망</td> <td>59A(901동,903동 1호라인)</td> </tr> </tbody> </table>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복합안전방충망	59A(901동,903동 1호라인)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복합안전방충망	59A(901동,903동)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가전/기타	복합안전방충망	59A(901동,903동 1호라인)												
59Page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하단 공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A타입 중 901동 1호라인, 903동 1호라인 세대는 침실1, 드레스룸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해당세대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 선반 및 벽판넬 적용 범위가 다름을 인지하시어 유상옵션 계약시 참조 바랍니다. -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와 매립형중문(포켓도어)의 선택에 따라 열림 방향(손잡이 위치)이 상이하니, 계약 전 주택 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형세대(84D1, 84D1A, 84D2, 84D2A, 84T)에서 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선택시 2개소(공용2/부부욕실) 적용으로 공용욕실1에는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주택 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케어룸 유상옵션 선택 시 현관 디딤판 사이즈 및 벽체 두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그니처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저분리함 및 악세사리 등 제품 색상 및 디자인,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됩니다. 												
73Page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단지내부여건 / 단지배치 및 지상부” 하단 공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동, 903동, 913동, 914동, 91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동 1호라인 59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되며, 드레스룸 창호는 측벽(900*900)에 설치됩니다. : 903동 1호라인 59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되며, 드레스룸 창호는 측벽(900*900)에 설치됩니다. : 913동 2호라인 84B2타입은 돌출발코니가 측벽과 접하여 2면 개방으로 시공됩니다. : 914동 3호라인 84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 915동 3호라인 74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1.21.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4-864-554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대상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1.21.(금)	25.12.01.(월)	25.12.02.(화)	25.12.03.(수)	25.12.09.(화)	25.12.12.(금)~ 25.12.16.(화)	25.12.20.(토)~ 25.12.23.(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내 분양 상담전화(☎ 044-864-554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등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1.2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60%를 우선공급하며,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40%를 공급(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6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4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12.01.(월)	25.12.02.(화)	25.12.03.(수)	25.12.09.(화)	25.12.12.(금)~ 25.12.16.(화)	25.12.20.(토)~ 25.12.23.(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3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31282호(2025.11.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101-9번지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8층 15개동 총 424세대
 [특별공급 252세대(기관추천 40세대, 다자녀가구 37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7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2월말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563	1	059.9552A	59A	59.9552	21.5490	81.5042	53.3381	134.8423	55.5662	34	2	0	4	0	3	9	25	4
	2	059.9832B	59B	59.9832	22.4220	82.4052	53.3630	135.7682	55.5922	29	3	0	10	0	8	21	8	3
	3	074.8763A	74A	74.8763	26.2226	101.0989	66.6124	167.7114	69.3950	47	4	0	8	0	6	18	29	4
	4	080.1280A	80A	80.1280	28.3956	108.5236	71.2844	179.8081	74.2623	26	2	2	3	0	3	10	16	8
	5	080.2425B	80B	80.2425	27.3011	107.5436	71.3864	178.9300	74.3684	34	4	7	10	1	8	30	4	2
	6	084.8262A	84A	84.8262	29.2587	114.0849	75.4641	189.5491	78.6165	88	9	5	15	2	13	44	44	6
	7	084.0000B	84B1	84.9920	29.6446	114.6366	75.6118	190.2483	78.7702	50	10	20	31	5	25	91	12	0
	8		84B2	84.9920	29.6446	114.6366	75.6118	190.2483	78.7702	53								
	8	084.8060C	84C	84.8060	29.2551	114.0611	75.4463	189.5073	78.5978	48	5	2	8	1	7	23	25	3
	9	084.0000D	84D1	84.8987	31.4547	116.3534	75.5287	191.8821	78.6837	4	1	1	2	0	2	6	7	5
	84D1A		84.9240	30.7103	115.6343	75.5512	191.1855	78.7072	3									
	84D2		84.8616	31.2973	116.1589	75.4957	191.6545	78.6493	4									
	84D2A		84.9558	30.6877	115.6435	75.5795	191.2230	78.7366	2									
10	084.8616T	84T	84.8616	31.2973	116.1589	75.4957	191.6545	78.6493	2	0	0	0	0	0	0	2	2	
합 계										424	40	37	91	9	75	252	172	37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행]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실제 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9552A	059.9832B	074.8763A	080.1280A	080.2425B	084.8262A	084.0000B	084.8060C	084.0000D	084.8616T
약식표기	59A	59B	74A	80A	80B	84A	84B1, 84B2	84C	84D1, 84D1A, 84D2, 84D2A	84T

※ 청약신청 시 주택형(059.9552A, 059.9832B, 074.8763A, 080.1280A, 080.2425B, 084.8262A, 084.0000B, 084.8060C, 084.0000D, 084.8616T) 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약식표기된 개별 타입별 청약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주택형)		059.9552A	059.9832B	074.8763A	080.1280A	080.2425B	084.8262A	084.0000B	084.8060C	084.0000D	084.8616T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	-	-	1	-	-	1	1	-	-	3
		대전광역시	-	-	1	-	-	1	1	-	-	3
		충청남도	-	-	-	-	1	-	-	-	1	-
	국가유공자	-	1	-	1	1	2	2	1	-	-	8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	-	2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1	-	2	-	-	-	4
	중소기업 근로자	-	-	-	-	-	1	-	3	-	-	4
	북한이탈주민	1	-	-	-	-	1	-	-	-	-	2
	우수선수	-	-	1	-	-	1	-	-	-	-	2
	시책추진(입주기업 종사자)	1	-	1	-	1	2	2	1	-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2	7	5	20	2	1	-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0	8	3	10	15	31	8	2	-	9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1	2	5	1	-	-	9	
생애최초 특별공급	3	8	6	3	8	13	25	7	2	-	75	
합 계	9	21	18	10	30	44	91	23	6	0	25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2026.05.20		2026.09.21	2027.01.20	2027.05.20	2027.08.20	2027.11.22	입주 지정일
059.9552A	59A	34	901동1호 903동3호 915동2호	1층	1	105,656,934	319,343,066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2층	1	106,899,957	323,100,043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3층	2	107,894,375	326,105,625	434,0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4층	3	109,634,607	331,365,393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5~9층	13	111,374,839	336,625,161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10~14층	5	113,115,071	341,884,929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15층 이상	4	114,606,698	346,393,302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903동1호	4층	1	104,165,307	314,834,693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5~8층	4	105,656,934	319,343,066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059.9832B	59B	29	901동2호 903동2호 915동1호	1층	1	103,668,098	313,331,902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2층	1	104,911,121	317,088,879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3층	2	105,905,539	320,094,461	426,0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4층	3	107,645,771	325,354,229	433,0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5~9층	13	109,137,398	329,862,602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10~14층	5	110,877,630	335,122,37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5층 이상	4	112,369,257	339,630,743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074.8763A	74A	47	901동3호 909동2호 910동2호 915동3호	1층	2	131,263,203	396,736,797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2층	3	132,506,226	400,493,774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3층	4	133,997,853	405,002,147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4층	4	135,986,689	411,013,311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5~9층	19	137,975,526	417,024,474	555,0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10~14층	11	140,212,967	423,787,033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15층 이상	4	142,201,803	429,798,197	572,0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080.1280A	80A	26	902동2호 910동1호,3호 911동1호 912동2호 913동2호,3호 914동2호	1층	6	140,710,176	425,289,824	566,0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2층	7	142,201,803	429,798,197	572,0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3층	2	143,693,430	434,306,570	578,0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4층	1	145,930,871	441,069,129	587,0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5~9층	5	148,168,312	447,831,688	596,0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10~14층	5	150,405,753	454,594,247	605,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5층 이상	4	152,642,194	461,356,802	614,0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080.2425B	80B	34	911동3호 913동1호	1층	1	136,732,503	413,267,497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층	2	138,224,130	417,775,870	556,0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3층	2	139,715,758	422,284,242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4층	2	141,704,594	428,295,406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5~9층	10	143,942,035	435,057,965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10~14층	10	146,179,476	441,820,524	588,0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15층 이상	7	148,168,312	447,831,688	596,0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084.8262A	84A	88	902동3호 909동1호,3호 911동2호 912동3호 914동3호	1층	4	150,157,149	453,842,851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2층	6	151,897,381	459,102,619	611,0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3층	6	153,389,008	463,610,992	617,0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4층	6	155,875,053	471,124,947	627,0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88,100,000
				5~9층	30	158,112,494	477,887,506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10~14층	26	160,598,540	485,401,460	646,0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15층 이상	10	162,835,981	492,164,019	655,0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084.0000B	84B1	50	902동2호 910동1호 911동1호 912동2호 913동2호,3호 914동2호	3층	4	146,925,290	444,074,71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77,300,000	
				4층	2	149,411,335	451,588,665	601,0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5~9층	19	151,648,776	458,351,224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10~14층	16	153,886,217	465,113,783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15층 이상	9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84B2	53	902동2호 910동1호 911동1호 912동2호 913동2호,3호 914동2호	2층	1	145,433,662	439,566,338	585,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3층	2	146,925,290	444,074,71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77,300,000	
				4층	5	149,411,335	451,588,665	601,0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5~9층	16	151,648,776	458,351,224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10~14층	19	153,886,217	465,113,783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084.8060C	84C	48	902동1호	1층	1	147,173,894	444,826,106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912동1호 914동1호	2층	3	148,914,126	450,085,874	599,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3층	3	150,405,753	454,594,247	605,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4층	3	152,643,194	461,356,806	614,0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5~9층	15	155,129,240	468,870,760	624,0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87,200,000	
				10~14층	15	157,366,681	475,633,319	633,0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189,900,000	
				15층 이상	8	159,604,122	482,395,878	642,0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92,600,000	
084.0000D	84D1	4	904동1호,2호 908동1호,2호	4층	1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5~6층	3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84D2	4	904동1호,2호 908동1호,2호	3층	1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4층	1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6~7층	2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84D2A	2	905동1호 907동1호	5층	2	156,123,658	471,876,342	628,0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084.8616T	84T	2	905동1호 906동1호	1층	2	165,943,538	501,556,462	667,500,000	66,750,000	66,750,000	66,750,000	66,750,000	66,750,000	66,750,000	200,250,000	

■ 유의사항

-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건설 예정인 건물은 계약면적에 따라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비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혁신성장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 상기 분양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단,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 상기 분양대금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분양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모부부양 신생아(공공)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th> <th style="width:30%;">구분</th> <th style="width:50%;">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동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25%;">구분</th> <th style="width: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th> <th style="width: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 시책추진(입주기업 종사자) : 세종특별자치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입주시에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을 준용한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435 2123 882">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6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309 1034 2123 1177">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2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922 2130 1361"> <thead> <tr> <th data-bbox="309 922 535 954">단계</th> <th data-bbox="535 922 869 954">소득구분</th> <th data-bbox="869 922 2130 954">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954 535 1023">1단계</td> <td data-bbox="535 954 869 1023">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data-bbox="869 954 2130 102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023 535 1091">2단계</td> <td data-bbox="535 1023 869 1091">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data-bbox="869 1023 2130 109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091 535 1160">3단계</td> <td data-bbox="535 1091 869 1160">우선공급 (35%)</td> <td data-bbox="869 1091 2130 116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160 535 1228">4단계</td> <td data-bbox="535 1160 869 1228">일반공급 (15%)</td> <td data-bbox="869 1160 2130 1228">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309 1228 535 1361" rowspan="2">5단계</td> <td data-bbox="535 1228 869 1361" rowspan="2">추첨공급</td> <td data-bbox="869 1228 1160 1297">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data-bbox="1160 1228 2130 1297">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869 1297 1160 1361">1인 가구</td> <td data-bbox="1160 1297 2130 1361">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data-bbox="309 1361 2130 1396">※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 60%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2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

비고

「법령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p>인정 적용기준</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p>	<p>: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공고단지 청약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2.09.(화) ~ 2025.12.18(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12.0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5.12.12.(금) ~ 2025.12.16.(화)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30)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세대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또는 합산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포함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② 소득금액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③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③ 위촉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①,③,④ 해당 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포함)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 제출	①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 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 직인날인이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홈택스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 부동산		제출서류	발급처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단독주택	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 제외 (해당자)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① 농지대장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정부24 / 지자체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초지 (초지법 제2조1호)	① 축산업허가증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지자체 축산과 ② 토지이음(eum.go.kr) / 지자체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중중소유 토지 (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세대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또는 합산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청약자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보는
경우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2.20.(토) ~ 2025.12.23.(화)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3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건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자격검증 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분,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건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건본주택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비 및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작성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본인)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868601-01-759715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건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및 제3항 및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계약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제외)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용자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 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적격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으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분양 계약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될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의거 기본선택품목 및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타입(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 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7,796,000	779,600	7,016,400
59B	7,476,000	747,600	6,728,400
74A	7,842,000	784,200	7,057,800
80A	7,676,000	767,600	6,908,400
80B	9,214,000	921,400	8,292,600
84A	7,829,000	782,900	7,046,100
84B1	7,708,000	770,800	6,937,200
84B2	8,045,000	804,500	7,240,500
84C	8,384,000	838,400	7,545,600
84D1	4,522,000	452,200	4,069,800
84D1A	4,640,000	464,000	4,176,000
84D2	4,485,000	448,500	4,036,500
84D2A	4,614,000	461,400	4,152,600
84T	4,485,000	448,500	4,036,5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868601-01-759728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시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고풍압 구조 검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및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외부 전면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추후 전면창 설치 등 구조 변경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 또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상/하부층 확장 세대일 경우 발코니를 통한 배수, 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배수, 우수배관 설치 위치는 확장형 세대기준으로 설치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약식표기)		옵션 선택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실내기)	설치대수	공급금액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59A	LG	일반형	2개실 (거실, 침실1)	2	4,600,000	460,000	4,140,000
			4개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6,850,000	685,000	6,165,000
		프리미엄형	2개실 (거실, 침실1)	2	5,600,000	560,000	5,040,000
			4개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9,000,000	900,000	8,100,000
59B	LG	일반형	2개실 (거실, 침실1)	2	4,600,000	460,000	4,140,000
			4개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6,830,000	683,000	6,147,000
		프리미엄형	2개실 (거실, 침실1)	2	5,600,000	560,000	5,040,000
			4개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8,980,000	898,000	8,082,000
74A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140,000	614,000	5,526,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380,000	838,000	7,542,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630,000	763,000	6,867,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810,000	1,081,000	9,729,000
80A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170,000	617,000	5,553,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470,000	847,000	7,623,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650,000	765,000	6,885,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00,000	1,090,000	9,810,000
80B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170,000	617,000	5,553,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430,000	843,000	7,587,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660,000	766,000	6,894,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860,000	1,086,000	9,774,000
84A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300,000	630,000	5,670,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500,000	850,000	7,650,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800,000	780,000	7,020,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50,000	1,095,000	9,855,000
84B1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320,000	632,000	5,688,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530,000	853,000	7,677,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820,000	782,000	7,038,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80,000	1,098,000	9,882,000
84B2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320,000	632,000	5,688,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460,000	846,000	7,614,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820,000	782,000	7,038,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10,000	1,091,000	9,819,000
84C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330,000	633,000	5,697,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480,000	848,000	7,632,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830,000	783,000	7,047,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30,000	1,093,000	9,837,000
84D1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840,000	684,000	6,156,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220,000	922,000	8,298,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8,330,000	833,000	7,497,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680,000	1,168,000	10,512,000
84D1A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850,000	685,000	6,165,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460,000	846,000	7,614,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8,340,000	834,000	7,506,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10,000	1,091,000	9,819,000
84D2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850,000	685,000	6,165,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280,000	928,000	8,352,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8,340,000	834,000	7,506,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730,000	1,173,000	10,557,000
84D2A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860,000	686,000	6,174,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290,000	929,000	8,361,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8,350,000	835,000	7,515,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740,000	1,174,000	10,566,000
84T	LG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770,000	677,000	6,093,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260,000	926,000	8,334,000
		프리미엄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8,270,000	827,000	7,443,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750,000	1,175,000	10,575,000
--	--	-----------------------------	---	------------	-----------	------------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에어컨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제품으로 계약이후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전원,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전원은 실외기실에 제공)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위 내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로 실외기 설치 시 상부 전열교환기의 유지보수 및 필터교환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이더라도, 엘지, 삼성 등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품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및 기타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 실내기 조합률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류는 제조사 사정에 따라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1) 인테리어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옵션품목 및 내용	공급금액			비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주방	주방 특화	59A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3,000,000	300,000	2,700,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5,400,000	540,000	4,860,000

		59B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790,000	279,000	2,511,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5,240,000	524,000	4,716,000
		74A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110,000	211,000	1,899,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확장형 현관워크인 공간	7,610,000	761,000	6,849,000
		80A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860,000	286,000	2,574,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확장형 현관워크인 공간	7,470,000	747,000	6,723,000
		80B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3,560,000	356,000	3,204,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주방조명특화	4,560,000	456,000	4,104,000
		84A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850,000	285,000	2,565,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확장형 현관워크인 공간	8,400,000	840,000	7,560,000
		84B1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780,000	278,000	2,502,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확장형 현관워크인 공간	7,090,000	709,000	6,381,000
		84B2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780,000	278,000	2,502,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확장형 현관워크인 공간	7,080,000	708,000	6,372,000
		84C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3,550,000	355,000	3,195,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7,860,000	786,000	7,074,000
		84D1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540,000	254,000	2,286,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4,730,000	473,000	4,257,000
		84D1A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540,000	254,000	2,286,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 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4,630,000	463,000	4,167,000
84D2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500,000	250,000	2,250,000		

	84D2A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4,630,000	463,000	4,167,000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500,000	250,000	2,250,000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4,630,000	463,000	4,167,000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500,000	250,000	2,250,000				
		84T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고급형 주방가구 (유리+고급PET가구,상하부간접조명+고급형수저분리함+프라이팬수납 장+외산수전+사각싱크볼) 대면형 아일랜드식탁, 주방조명특화	4,630,000	463,000		4,167,000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 벽/상판, 사각싱크볼	2,500,000	250,000		2,250,000		
		빌트인 오븐장	74A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장식장(광파오븐+유리장식장)	2,730,000		273,000	2,457,000	미선택 시 : 미제공
			80A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장식장(광파오븐+유리장식장)	2,750,000		275,000	2,475,000	
	84A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장식장(광파오븐+유리장식장)	2,750,000	275,000		2,475,000		
	84B1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장식장(광파오븐+유리장식장)	2,450,000	245,000		2,205,000		
	84B2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장식장(광파오븐+유리장식장)	2,450,000	245,000		2,205,000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장	59A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냉장고장		6,120,000	612,000		5,508,000	미선택 시 : 미제공	
		59B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냉장고장		6,120,000	612,000		5,508,000		
		74A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980,000	698,000		6,282,000		
80A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980,000	698,000	6,282,000				
80B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냉장고장		6,330,000	633,000	5,697,000				
84A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950,000	695,000	6,255,000				
84B1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50,000	665,000	5,985,000				
84B2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50,000	665,000	5,985,000				
84C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790,000	679,000	6,111,000				
84D1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20,000	662,000	5,958,000				
84D1A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20,000	662,000	5,958,000				
84D2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20,000	662,000	5,958,000				
84D2A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20,000	662,000	5,958,000				
84T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인출형 수납가구포함)		6,620,000	662,000	5,958,000				
현관	현관 중문	59A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40,000	144,000	1,296,000	미선택 시 : 미제공		
		59B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50,000	145,000	1,305,000			
		74A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500,000	150,000		1,350,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20,000	192,000		1,728,000	
		80A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500,000	150,000		1,350,000	
			시그니처 스타일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70,000	197,000		1,773,000	

		80B	선택시 현관케어룸 옵션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90,000	149,000	1,341,000			
			현관케어룸 옵션 선택시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50,000	195,000	1,755,000			
		84A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500,000	150,000	1,350,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50,000	195,000	1,755,000			
		84B1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30,000	193,000	1,737,000			
		84B2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30,000	193,000	1,737,000			
		84C	현관케어룸 옵션 미선택시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500,000	150,000	1,350,000			
			현관케어룸 옵션 선택시	포켓도어(벽매립형 1슬라이딩도어)	1,970,000	197,000	1,773,000			
		84D1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84D1A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84D2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84D2A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84T		3연동 슬라이딩(매립형)	1,460,000	146,000	1,314,000			
		현관 특화	59A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1,790,000	179,000		1,611,000	미선택 시 : 미제공
			59B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220,000	222,000		1,998,000	
			74A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3,830,000	383,000		3,447,000	
					확장형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1,970,000	197,000		1,773,000	
			80A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4,620,000	462,000		4,158,000	
확장형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500,000				250,000	2,250,000				
80B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4,600,000	460,000	4,140,000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500,000	250,000	2,250,000					
84A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4,200,000	420,000	3,780,000				
			확장형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500,000	250,000	2,250,000				
84B1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3,940,000	394,000	3,546,000				
			확장형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380,000	238,000	2,142,000				
84B2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시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3,920,000	392,000	3,528,000				
			확장형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380,000	238,000	2,142,000				
84C	현관 케어룸(고급신발장+의류관리기공간+신발살균기+전신경)		5,310,000	531,000	4,779,000					
	현관 워크인장(은경도어+시스템가구)		2,360,000	236,000	2,124,000					

복도	복도 워크인장	59A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	1,700,000	170,000	1,530,000	
		59B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	1,180,000	118,000	1,062,000	
		84D1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망바스켓포함))	2,210,000	221,000	1,989,000	
		84D1A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망바스켓포함))	1,710,000	171,000	1,539,000	
		84D2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망바스켓포함))	2,170,000	217,000	1,953,000	
		84D2A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	1,270,000	127,000	1,143,000	
		84T	복도 워크인장(가구도어+시스템가구(망바스켓포함))	2,170,000	217,000	1,953,000	
거실	벽바닥 특화	59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1,890,000	189,000	1,701,000	미선택시 : 벽지 기본형 강마루
		59B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560,000	256,000	2,304,000	
		74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180,000	218,000	1,962,000	
		80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1,970,000	197,000	1,773,000	
		80B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740,000	274,000	2,466,000	
		84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400,000	240,000	2,160,000	
		84B1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200,000	220,000	1,980,000	
		84B2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200,000	220,000	1,980,000	
		84C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2,380,000	238,000	2,142,000	
		84D1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4,650,000	465,000	4,185,000	
		84D1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4,460,000	446,000	4,014,000	
		84D2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4,760,000	476,000	4,284,000	
		84D2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4,450,000	445,000	4,005,000	
		84T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 거실/주방/복도 바닥)+광폭강마루(침실 바닥)	4,770,000	477,000	4,293,000	
바닥특화	바닥특화	59A	전실 광폭강마루	840,000	84,000	756,000	미선택시 : 기본형 강마루
		59B	전실 광폭강마루	850,000	85,000	765,000	
		74A	전실 광폭강마루	990,000	99,000	891,000	
		80A	전실 광폭강마루	1,040,000	104,000	936,000	
		80B	전실 광폭강마루	960,000	96,000	864,000	
		84A	전실 광폭강마루	1,100,000	110,000	990,000	
		84B1	전실 광폭강마루	1,020,000	102,000	918,000	
		84B2	전실 광폭강마루	1,030,000	103,000	927,000	
		84C	전실 광폭강마루	1,020,000	102,000	918,000	
		84D1	전실 광폭강마루	1,040,000	104,000	936,000	
		84D1A	전실 광폭강마루	960,000	96,000	864,000	

		84D2	전실 광폭강마루	1,030,000	103,000	927,000	
		84D2A	전실 광폭강마루	950,000	95,000	855,000	
		84T	전실 광폭강마루	1,030,000	103,000	927,000	
거실 아트월 특화	59A		대형 세라믹타일	3,680,000	368,000	3,312,000	미선택시 : 타일(600*600)
			디자인월	1,200,000	120,000	1,080,000	
	59B		대형 세라믹타일	3,680,000	368,000	3,312,000	
			디자인월	1,200,000	120,000	1,080,000	
	74A		대형 세라믹타일	3,790,000	379,000	3,411,000	
			디자인월	1,350,000	135,000	1,215,000	
	80A		대형 세라믹타일	3,860,000	386,000	3,474,000	
			디자인월	1,450,000	145,000	1,305,000	
	80B		대형 세라믹타일	3,870,000	387,000	3,483,000	
			디자인월	1,450,000	145,000	1,305,000	
	84A		대형 세라믹타일	3,900,000	390,000	3,510,000	
			디자인월	1,500,000	150,000	1,350,000	
	84B1		대형 세라믹타일	3,820,000	382,000	3,438,000	
			디자인월	1,400,000	140,000	1,260,000	
	84B2		대형 세라믹타일	3,820,000	382,000	3,438,000	
			디자인월	1,400,000	140,000	1,260,000	
	84C		대형 세라믹타일	3,900,000	390,000	3,510,000	
			디자인월	1,500,000	150,000	1,350,000	
	84D1		대형 세라믹타일	3,810,000	381,000	3,429,000	
			디자인월	1,390,000	139,000	1,251,000	
	84D1A		대형 세라믹타일	3,810,000	381,000	3,429,000	
			디자인월	1,390,000	139,000	1,251,000	
	84D2		대형 세라믹타일	3,810,000	381,000	3,429,000	
			디자인월	1,390,000	139,000	1,251,000	
	84D2A		대형 세라믹타일	3,810,000	381,000	3,429,000	
			디자인월	1,390,000	139,000	1,251,000	
	84T		대형 세라믹타일	3,810,000	381,000	3,429,000	
			디자인월	1,390,000	139,000	1,251,000	
거실조명 특화	59A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770,000	177,000	1,593,000	미선택시 : LED 사각등

		59B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770,000	177,000	1,593,000	
		74A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950,000	195,000	1,755,000	
		80A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2,180,000	218,000	1,962,000	
		80B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2,260,000	226,000	2,034,000	
		84A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2,300,000	230,000	2,070,000	
		84B1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2,180,000	218,000	1,962,000	
		84B2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2,180,000	218,000	1,962,000	
		84C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2,210,000	221,000	1,989,000	
		84D1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480,000	148,000	1,332,000	
		84D1A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480,000	148,000	1,332,000	
		84D2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480,000	148,000	1,332,000	
		84D2A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480,000	148,000	1,332,000	
		84T	직간접조명(2면)+실링팬+우물천장	1,480,000	148,000	1,332,000	
침실 /드레스룸	드레스룸 특화	59A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도어	3,560,000	356,000	3,204,000	미선택시 : 시스템가구
		59B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도어	3,450,000	345,000	3,105,000	
		74A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220,000	422,000	3,798,000	
		80A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910,000	491,000	4,419,000	
		80B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390,000	439,000	3,951,000	
		84A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900,000	490,000	4,410,000	
		84B1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830,000	483,000	4,347,000	
		84B2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830,000	483,000	4,347,000	
		84C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4,900,000	490,000	4,410,000	
		84D1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2,670,000	267,000	2,403,000	미선택시 : 시스템가구
		84D1A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2,670,000	267,000	2,403,000	
		84D2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2,680,000	268,000	2,412,000	
		84D2A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2,680,000	268,000	2,412,000	
		84T	통합형 파우더/고급드레스룸(상부선반조명)+유리슬라이딩도어	2,680,000	268,000	2,412,000	
	침실 불박이장 (1개소)	59A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미선택시 : 미제공(벽지마감)
59B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74A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80A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80B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84A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84B1		침실3 불박이장	1,660,000	166,000	1,494,000
		84B2		침실2 불박이장	1,660,000	166,000	1,494,000
		84C		침실3 불박이장	1,950,000	195,000	1,755,000
		84D1		침실3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84D1A		침실3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84D2		침실3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84D2A		침실3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84T		침실3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부실	(부실/특화/부부)	59A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860,000	486,000	4,374,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390,000	439,000	3,951,000
		59B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820,000	482,000	4,338,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74A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830,000	483,000	4,347,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0A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0B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4A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4B1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4B2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젠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 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공용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공용1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2,900,000	290,000	2,610,000		
			84D1	공용2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4D1A	공용1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2,900,000	290,000	2,610,000	
				공용2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40,000	494,000	4,446,000	
			84D2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공용1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2,900,000	290,000	2,610,000	
			84D2A	공용2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84T	공용1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2,900,000	290,000	2,610,000	
				공용2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욕조 측면 타일 마감	4,900,000	490,000	4,410,000	
					부부	대형 벽(600*1200)/바닥(300*600)타일+외산 수전+고급형 세면대+고급형 젤다이+고급형 욕기+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고급형악세사리/컬러샤워부스	4,400,000	440,000	3,960,000

(2) 가전 및 기타

구분	항목	타입 (약식표기)	옵션품목 및 내용	공급금액			비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시정일)	
가전 /기타	인덕션	전타입	하츠(SSIH-3605SABH)	350,000	35,000	315,000	
			LG(BE13ASB4BE)	1,400,000	140,000	1,26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LG(DIE6PT)		1,800,000	180,000	1,620,000
	스마트 복합환풍기	전타입	휴젠티3(공용욕실)		800,000	80,000	720,000
			휴젠티3(부부욕실)		800,000	80,000	720,000
	의류관리기	전타입	LG(SC5MBR53)		2,100,000	210,000	1,890,000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기본형	힘펠 DHV-5PCCU	1,200,000	120,000	1,080,000
			고급형	대우컴프레서 DC51BDABA	2,000,000	200,000	1,800,000
열차단필름	59A				2,880,000	288,000	2,592,000
	59A(901동,903동 1호라인)				3,070,000	307,000	2,763,000
	59B				2,860,000	286,000	2,574,000
	74A				3,400,000	340,000	3,060,000
	74A(915동)				3,660,000	366,000	3,294,000
	80A				3,500,000	350,000	3,150,000
	80B				3,390,000	339,000	3,051,000
	84A				3,500,000	350,000	3,150,000
	84A(914동)				3,750,000	375,000	3,375,000
	84B1				3,800,000	380,000	3,420,000
	84B2				3,800,000	380,000	3,420,000
	84C				3,260,000	326,000	2,934,000
	84D1				3,750,000	375,000	3,375,000
	84D1A				4,030,000	403,000	3,627,000
	84D2				3,750,000	375,000	3,375,000
	84D2A				4,030,000	403,000	3,627,000
84T				3,750,000	375,000	3,375,000	
복합 안전방충망	59A				2,080,000	208,000	1,872,000
	59A(901동,903동 1호라인)				2,280,000	228,000	2,052,000
	59B				2,080,000	208,000	1,872,000
	74A				2,430,000	243,000	2,187,000
	74A(915동)				2,640,000	264,000	2,376,000
	80A				2,700,000	270,000	2,430,000
	80B				2,270,000	227,000	2,043,000

		84A		2,700,000	270,000	2,430,000	
		84A(914동)		2,900,000	290,000	2,610,000	
		84B1		2,860,000	286,000	2,574,000	
		84B2		2,860,000	286,000	2,574,000	
		84C		2,500,000	250,000	2,250,000	
		84D1		1,570,000	157,000	1,413,000	
		84D1A		1,720,000	172,000	1,548,000	
		84D2		1,570,000	157,000	1,413,000	
		84D2A		1,720,000	172,000	1,548,000	
		84T		1,570,000	157,000	1,413,000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전타입		1,150,000	115,000	1,035,000	
	전동빨래 건조대	59A		250,000	25,000	225,000	
		59B		250,000	25,000	225,000	
		74A		250,000	25,000	225,000	
		80A		250,000	25,000	225,000	
		80B		250,000	25,000	225,000	
		84A		250,000	25,000	225,000	
		84B1		250,000	25,000	225,000	
		84B2		250,000	25,000	225,000	
		84C		250,000	25,000	225,000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전기, 통신설비 마감자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중 가구는 타입별로 수납공간의 크기나 디자인 구성, 가구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시공상 문제 및 하자를 제외한 제품 자체의 하자 및 고장 등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아닌 본 제품의 최초 제조업체에 있으며 제품의 A/S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최초 제조업체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항목별 부분선택이 불가하며, 교차선택도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868601-01-759731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시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59A타입 중 901동 1호라인, 903동 1호라인 세대는 침실1, 드레스룸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해당세대 드레스룸 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 선반 및 벽판넬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유상옵션 계약시 참조 바랍니다.
- 현관 3연동 슬라이딩도어와 매립형중문(포켓도어)의 선택에 따라 열림 방향(손잡이 위치)이 상이하니, 계약 전 주택 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형세대(84D1, 84D1A, 84D2, 84D2A, 84T)에서 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선택시 2개소(공용2/부부욕실) 적용으로 공용욕실1에는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주택 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케어룸 유상옵션 선택 시 현관 디딤판 사이즈 및 벽체 두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그니처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저분리함 및 악세사리 등 제품 색상 및 디자인,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됩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중문 설치 옵션은 견본주택과 본 시공 시 색상 및 디자인 세부 디테일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중문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 디딤판 및 벽체 두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매립중문(포켓도어) 선택 시 하자 처리는 현관 가구 철거 후 A/S가 진행되어 하자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케어룸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 살균기가 1EA 설치되며, 각 타입별 평형별 디자인 상이에 따라 살균 적용구간이 상이하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케어룸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 살균기 및 장식장(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케어룸 옵션 선택 시 의류관리기는 별도 옵션으로 미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미선택시 벽면은 벽지 및 걸레받이 마감으로 시공 됩니다.
-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팬트리, 현관사이즈, 시공부위 및 규격을 포함한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옵션 선택 시 현관워크인장의 벽체가 두꺼워지며 내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의류관리기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 케어룸 옵션 미선택세대는 침실3(84B2해당) 또는 침실2(84B2외 전타입)에 설치 예정입니다.
- 아트월 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복도벽 및 쇼파 뒷벽에 디자인월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 벽장재 나누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조명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과 바닥특화 옵션(광폭마루)옵션은 동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 시 디자인마루 시공범위는 거실+주방+복도 바닥이며, 침실 바닥에는 광폭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 옵션 선택시 디자인월/마루 자재는 기능성자재가 아니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스크래치,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강마루, 디자인마루, 광폭 강마루)가 미시공됩니다.
- 주방(베이지/시그니처)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형 대비 마감재(재질 및 조명등)등이 변경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타입별/평형형 가구,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함으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및 상판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강마루, 광폭마루, 디자인 월/마루)가 미시공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측면에 인출형 서랍장이 시공되며, 타입별로 사이즈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된 색상만 선택 가능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외부 마감은 가구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시그니처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 조명 안정기 설치로 주방장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미선택 시 가스 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 내폭이 일부 좁아지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시그니처 유상옵션 선택 시 하부장 간접 조명 스위치 위치는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와 스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수납장, 드레스룸 특화, 주방 특화, 현관 특화 등 옵션 선택 시 타입별 수납공간의 크기나 디자인 구성이 상이하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A, 59B, 80B타입을 제외한 전타입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인출형수납장이 함께 제공되며, 타입별로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기본형 대비 디자인 및 마감자재 색상등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포함된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내 포함 된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본시공 시 부부/공용 욕실 기본형/유상옵션형 바닥 및 벽 타일 나누기 및 욕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시공 위치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 상세,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부부욕실 욕실장 아래 벽체가 타일 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레인샤워는 돌출형으로 변경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안전방충망 유상옵션 선택시 미세먼지망은 주방창에만 시공되며, 복층형세대(84D1,84D1A,84D2,84D2A,84T타입)는 주방창이 없으므로 미세먼지망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는 전기식(가스식 미설치)으로 설치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발코니에서 주방까지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해당 공급금액은 가스배관 미설치 감소비용과 인덕션 추가 증가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계약 전 옵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선택품목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벽체마감(주방, 욕실 타일마감포함)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의 벽체도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 등),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소방감지기, 스피커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조명기구	부착/매입/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등 제외)	배선가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매입등기구
욕실	욕실천정, 타일(바닥/벽),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빌트인 가전기기류, 주방TV	소방관련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일반가구	가구류 일체,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수납장, 시스템선반류	
창호	목재문 및 ABS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일반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 도어록
기타	수전류(발코니)	

※ 상기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타입(약식표기)	59A	59B	74A	84A	80A (돌출전)	84B-1 (돌출형)	84B-2 (돌출형)	80B	84C	84D1	84D1-A (돌출형)	84D2	84D2-A (돌출형)	84T (테라스)
기본선택 (금액)	29,436,000	29,618,000	33,009,000	37,095,000	35,164,000	37,333,000	37,336,000	35,069,000	37,195,000	39,984,000	38,870,000	39,918,000	39,740,000	38,611,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단,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불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전기/통신마감자재 위치 등은 견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2월말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이상 최소 60일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인지세는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완납 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며,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경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또는 법률개정이나 행정명령, 민원, 공사중지 처분(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 원자재파동, 문화재발굴, 전염병의 유행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지, 하천,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학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하천, 학교 등)은 국가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자치시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조성사업 진행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도로 등 여타 추진 중에 있는 일체의 교통개선 계획과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 부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내의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공원, 하천, 상업시설, 공동주택, 학교 건설예정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조망권 및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에 고압선 및 철탑이 위치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차량진·출입구, 학원차량 대기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열교환실 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식재 및 시설물의 경우 현장 여건 및 소방협(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규모 및 구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 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혁신성장시설 지붕의 옥외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세대에서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에는 복층형 하우스가 구성되며, 기준층 세대와 내부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의 주차장은 지하1층(79대) 일부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과 분리되어 사용되므로 아파트 입주민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의 주차 계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벽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계획,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옹벽, 도로, 교량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의 따라 위치 및 개수, 색상, 디자인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단지 부지 외 조경 및 계획도로, 주변 지형, 주변 0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p>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설치된 로고의 개수 및 위치, 브랜드 디자인, 명칭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조감도 및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식재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방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식재 여건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일정시점 이전에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 및 옵션선택품목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A등급) 예비인증을 득하였으며,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세종 5-1 생활권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세종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 통합정보센터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 입주자는 스마트홈/타운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및 생활정보 데이터 (에너지 이용량 등)을 세종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 통합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스마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종 5-1생활권의 공유 커뮤니티 시설이용을 위해 본 아파트 단지 부대 복리시설은 스마트홈/타운서비스를 통한 공동 이용을 위해 타 단지의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홈/타운서비스 및 스마트서비스 일부의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지 운영의 일부분을 통합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스마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는 입주인이 선정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만일 전문업체가 필요한 경우 운영/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장비 불량/고장의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수리 조치는 가능하며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에 별도 계약을 전문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 스마트홈 IoT는 세대부 및 공용부의 관련 장치기(월패드 등)와 운영시스템(단지서버 등)이 적용되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미세먼지신호등은 입주인들이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에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광 자가망 및 통신 시설 중 일부는 단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스마트 및 정보통신서비스는 상위계획 및 5-1생활권 선도지구 통합정보센터(가칭) 건립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점이 입주 이후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입주시기에 일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p>■ 학교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 조건부 인근학교 배치 가능(사업지 인근의 '초5-2(가칭 합강1초)' '28. 3.(예정))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우리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학교 : '5학군' 내 중학교 배치 예정 ※ 중5-1 가칭 합강중 '28. 3. 개교(예정), 중5-2 연동중 '29. 3. 이전(예정), 중5-3 가칭 용호중(설립시기 미정) • 고등학교 : 학교군 내 배치 가능(세종시 전체 대상 배치 계획) •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인근 개발사업지 추이에 따라 배치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및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 변경 시, 당해지구 내 학교 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진행 시 참고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개교 시기는 주변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424세대로,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은 906동 1층에 위치)
	단지 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상의 미표시된 면적(대지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에 송전선로(철탑포함) 및 각종 도시시설물 등이 계획 또는 위치되어 있는 바,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근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교통장애 발생 및 주거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 하천 등 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사면처리,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높이 및 옹벽 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주변도로간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사생활침해 및 빗곰해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유치원, 고등학교, 과학문화센터 계획 / 단지 북측 공동주택 계획 / 단지 동측, 남측 녹지 계획 / 단지 서측, 남서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 먼지, 눈부심, 교통혼잡,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유해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본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부지 외 조경 및 계획도로, 주변 지형 및 고저차, 주변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단지배치 및 지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시설물 및 식재포함)과 차량차단기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세대의 입주자는 공간의 바닥재포장 및 조경수의 추가식재,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는 입주인 및 인근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흠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 실외기는 혁신성장시설 옥상에 설치되므로 인근 세대(903동, 907동)는 시야차단,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 생활폐기물처리장은 1층에 설치되므로 인근 세대(902동, 903동, 904동 사이에 위치)는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 냉난방장치(냉각탑, 실외기 등) 적용으로 인해 인근세대(903동, 904동, 907동)는 시야차단, 소음, 악취, 백연현상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 부대시설은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추가설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시설, 어린이,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1개층(902동, 909동, 910동, 911동, 912동, 913동, 914동, 915동), 2개층(901동), 3개층(903동, 904동, 907동, 908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입니다.
- 커뮤니티시설 외부의 지정석재 및 지정강판, 지정판넬 혼합마감입니다.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시 외부 입면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생성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의 기둥, 벽체 등은 색채디자인 적용으로 일부 석재 및 석재뿔칠로 시공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탐라이트,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단지내 관로, 투입구 등)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및 보관장소는 수집운반차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상부 일부 동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계획, 조경시설계획, 조경선형, 포장패턴계획 등), 저층부[1개층(902동, 909동, 910동, 911동, 912동, 913동, 914동, 915동), 2개층(901동), 3개층(903동, 904동, 907동, 908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계획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관리업체의 입주규정에 따라 사다리차가 이용 가능한 동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별 승강기 속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속도가 다르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및 문주,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와 같은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중계기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전시된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없음 (500세대 미만 제외)
-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예정 위치: 909동, 915동 아파트 지하2층
- 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등이 돌출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동별 소방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근 공항과 인접된 여건으로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포함) 설치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항공 장애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동의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탐라이트)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상부 일부 동(915동 예정) 옥상에는 TV 수신용 안테나가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층고는 1층 세대 2,500mm, 2층 이상 세대 2,400mm로 적용되었습니다.(복층세대는 1,2층 층고 2,400mm적용) 이에 일부 벽체, 가구 등의 마감이 1층 세대는 다를수 있습니다.
- 1층세대를 포함한 전세대의 옥실 천장고의 높이는 모두 동일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01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1동 1~2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반층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실외기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이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2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2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84C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서측으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이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외부계단과 승강기를 통한 보행동선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동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 중앙광장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3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3동 1~3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반층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실외기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이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4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4동 1~3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반층에 DA,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실외기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이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5동 지하1층에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과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이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6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6동 지하1층에 부대시설(어린이집)과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서측으로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실내놀이터가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7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7동 1~2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8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8동 1~3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실외기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09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9동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운동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DA, PM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혁신성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실내놀이터가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10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09동 지반층에 주민운동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DA, 탐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B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주민운동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11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11동 지반층에 어린이놀이터와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DA,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0B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오가닉가든이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12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12동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지하1층에 부대시설(어린이집, 실내놀이터)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단지 내 비상차로,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어린이집, 실내놀이터가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그로우가든, 단지 내 비상차로가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13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13동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단지 내 비상차로, 자전거보관소,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서측으로 단지 내 비상차로가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엔조이가든(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14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14동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단지 내 비상차로, 자전거보관소, DA,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C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엔조이가든(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서측으로 생활가로변과 도로,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외부계단이 계획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동측으로 단지 내 비상차로가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91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15동 지반층에 생활폐기물처리장과 지하1층 지하주차장 주출입구와 연결하여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에 면하여 자전거보관소, DA, 외부계단, 지하주차장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74A타입은 1층 피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그로우가든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서측으로 생활가로변과 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p>: 주동 북동측으로 외부계단이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동, 903동, 913동, 914동, 91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동 1호라인 59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되며, 드레스룸 창호는 측벽(900*900)에 설치됩니다. : 903동 1호라인 59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되며, 드레스룸 창호는 측벽(900*900)에 설치됩니다. : 913동 2호라인 84B2타입은 돌출발코니가 측벽과 접하여 2면 개방으로 시공됩니다. : 914동 3호라인 84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 915동 3호라인 74A 타입은 침실1 측벽에 미서기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지하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687대, 근린생활시설 지하 39대, 혁신성장시설 지하 40대, 총 766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 조업주차 2대(지하) 미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용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혁신성장시설 주차장의 출입구는 분리되며 별도의 차단기로 구분됩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근린생활시설+혁신성장시설용 주차장 이용, 근린생활시설+혁신성장시설 입주자/이용자의 아파트용 주차장 이용은 제한 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옥내소화전과,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 설치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제연환풍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등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902,912,913,914,915동은 지하1층~지하2층이 연결되어 있고, 901동~915동은 지하2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416 638 2063 754"> <thead> <tr> <th>구분</th> <th>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th> <th>주차면 높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지하1층</td> <td>2.7m</td> <td rowspan="2">2.1m 이상</td> <td>택배차량 진입가능</td> </tr> <tr> <td>지하2층</td> <td>2.7m</td> <td>택배차량 진입가능</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환풍, 주차장 급배기팬, 유인팬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 입주 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환풍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주동마다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에 각동 코어별로 1개소가 설치됩니다. 단, 추후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상부 및 램프 벽면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동등 이상의 품질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주차공간 내 전기차충전시설 급속 20개소, 완속 19개소, 콘센트 16개소 설치 예정)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 등에 따른 충전방해 민원발생시 관계법령 및 입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주차차단기 위치는 차량 입출입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주차시스템은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	주차면 높이	비고	지하1층	2.7m	2.1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2층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구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	주차면 높이	비고										
지하1층	2.7m	2.1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2층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경비실-1,2, 용역원휴게실, 어린이집, 경로당, 키즈스테이션, 실내놀이터,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주민휴게라운지, 주민공동시설(라이프케어센터1,2) 및 공구보관실, 외부계단, 생활폐기물처리장,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분양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 이미지 및 건본주택의 부대시설 모형, 마감, 시설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포함)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 등의 지붕에는 옥상 녹화가 적용되어 있어 누수하자를 고려하여 지붕 점검구, 외부 점검용 방호울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용역원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지하층 및 데크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 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의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분진,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시 변동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타운 공동이용을 위해 부대복리시설의 출입관리는 안면인식 출입장치 및 운영시스템(안면인식관리서버 등)이 적용되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5항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 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조경계획 등) 및 타사 또는 사업주체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로당~외부 보행로 구간 바닥 레벨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확정시 안내문이 발송 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84A 타입이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계단, 옹벽 및 조경석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천장 환기구,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환기장비 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의 사양, 제조사, 규격,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 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조경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사업주체의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탈로그 및 CG, 견본주택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모형 및 CG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현장 여건 등에 이유로 실제 설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디지털트윈 기반의 사이버모델하우스는 국가시범도시 통합정보센터의 정책에 따라 일부 기능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세대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확장 발코니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도면, 견본주택과 달리 발코니 길이 및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단열재마감, 실 사용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발코니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인접세대 하자 발생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계약자 본인 책임입니다. • 비확장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비확장의 경우, 하부 세대의 천장부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 위치(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고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 부분과 접한 확장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장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정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세대 내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부세대(최하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층 등)의 경우에는 피난을 위하여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기준에 따라 실외기실에 유지보수를 위한 문이 설치가 되었으며, 해당 문의 이용 용도 특성상 실외기실 전면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아 협소하며 가전(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배치로 이용에 제약 및 불편이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는 외부 탈출용 개폐형 그릴창이 설치 됩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거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람에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폭, 높이, 용량(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설치되는 목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보호대가 전면 및 후면에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및 다용도실의 단차는 바닥구배에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욕실 내 일부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실 및 샤워부스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단위세대 현관 및 팬트리(일부)에는 미설치 됩니다.
- 실시공사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입별 시공되는 배관위치에 따라 커튼박스의 사이즈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 되는 우수관 및 배수관에 의해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다용도실 및 테라스에 바닥배수구 및 우수, 배수, 오수배관, 가스계량기,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평면구성상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발생할 경우 세대내 설치되는 수전 및 실외기(오피션 선택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의 경우 해당 실 출입문쪽에 냉수가 설치되므로 세탁기 설치 시 냉,온수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 불량에 따른 제품 하자 발생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계약자 본인 책임입니다.
-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동별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측면 또는 위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부분의 상부장은 깊이나 높이 또는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현관,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PD, 다용도실)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중 일부는 이동식이 아닌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벽면 일부 경량벽체에 과도한 크기의 TV를 설치할 경우 별도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파손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천장 등의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부분의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에는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및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되며, 난방 제어시스템 및 각실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복층세대(84D1, 84D1A, 84D2, 84D2A, 84T)는 세대온수분배기 2준으로 나뉘는데 하부층은 주방 하부장, 상부층 설치위치가 설계도면상 드레스룸 벽쪽에 설계되어 있어, 드레스룸에 시공예정입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 디자인, 규격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함으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실시공 시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창나뉘기,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1개층(902동, 909동, 910동, 911동, 912동, 913동, 914동, 915동), 2개층(901동), 3개층(903동, 904동, 907동, 908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홍보물,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옥외공간(테라스 등)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테라스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세대간벽, 차폐시설물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1,84B2타입의 돌출형 발코니와 84D1,84D1A,84D2,84D2A,84T타입의 테라스, 돌출형발코니, 거실 창호에는 유리난간대가 설치됩니다. 그 외 세대 발코니에는 철재난간대로 설치되오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 지붕 공간에 대한 사유화의 권리가 없지만 관리를 위한 통로는 필요하므로 관리사무소 요청시 입주자의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혁신성장시설 지붕 공간에 대한 사유화의 권리가 없지만 관리를 위한 통로는 필요하므로 입주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에 설치 예정이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 및 세대내 환기배관(주방 및 욕실 직배기 배관 포함)으로 인해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IoT Hub의 조명/가전 제어는 일부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전제어 등의 일부 홈 IoT 서비스는 입주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 세대내 출입관리는 안면인식 현관 카메라 및 운영시스템(안면인식관리서버 등)이 적용되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제공 / 전시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1개층(902동, 909동, 910동, 911동, 912동, 913동, 914동, 915동), 2개층(901동), 3개층(903동, 904동, 907동, 908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와 고층부(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사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있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 또는 유상옵션, 전시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p>기계전기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층 옥실 오배수 배관이 하부층 옥실 천정에 시공되어지며, 해당 배관 유지보수 시 하부층 세대를 방문(출입)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우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세면기 후면, 드레스룸, 펜트리, 하부층 옥실 천정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세대를 방문(출입)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하향식 피난구실,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배관(우수, 오수, 배수, 주방 및 옥실 직배기배관 등), 소방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설 등은 실시공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옥실 및 주방은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직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옥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오수, 배수 배관 및 가스배관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및 직배기 환기구 설치에 따라 외벽 커튼월 크기 및 위치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마감재의 위치 제조사, 디자인, 기능, 재질, 수량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공용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동의 형태 및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홀에 위치한 공용부 대피공간은 일부 주거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용부 에너지 관련 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의 출입관리는 안면인식 로비폰 및 운영시스템(안면인식관리서버 등)이 적용되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24g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으로 해당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등

건축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기계 설비	타일공사	916,222,000	공사비	이윤	17,296,815,000		
	도로포장공사	981,627,000		돌공사	867,357,000		간접비	설계비	3,420,000,000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243,883,000		도장공사	5,753,968,900			감리비	3,061,611,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555,842,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208,160,202	
	조경공사	1,590,114,000		수장공사	164,920,000			분담금 및 부담금	94,991,514	
	부대시설공사	706,040,000		주방용구공사	1,246,062,00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2,443,260,000		그 밖의 건축공사	757,410,000			기타 사업비성경비	3,342,092,657	
	가시설물공사	549,733,000		급수설비공사	287,671,000			그밖의 비용	합계	35,877,724,495
	지정 및 기초공사	10,506,017,000		급탕설비공사	249,314,000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273,287,00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원, VAT 포함)

-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결정금액	산출근거	
택지비 가산항목	소 계	15,467,633,402	분양가 심사위원회 조정	
	기간이자	4,319,367,446		
	취득세	계		2,027,691,881
		취득세		1,843,356,255
		지방교육세		184,335,626
	재산세	계		367,749,573
		재산세		193,552,407
		지방교육세		38,710,481
		과세특례		135,486,685
	등기 수수료	계		11,661,271
		보수료		11,357,386
		인지대		303,885
	지역난방부담금	648,366,555		
	도시가스부담금	153,654,590		
한전표준시설부담금	82,500,000			
말뚝박기공사비	4,323,170,888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3,533,471,199			
건축비	소 계	49,116,197,501		

가산항목	법정초과복리시설		1,385,508,629	
	공동주택성능등급		4,001,619,062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612,895,393	
	인텔리전트 설비	계	30,457,415,818	
		홈네트워크	8,059,001,720	
		스마트 도시 단지 내 네트워크 서비스	14,447,982,010	
		초고속특등급	1,392,953,100	
		에어컨냉매배관	2,234,987,700	
		기계환기설비	2,375,617,400	
		쓰레기이송설비	1,946,873,888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1,033,405,000	
	사업승인 조건	계	8,626,813,599	
		법정초과조경	437,118,463	
		건강친화형주택 확대적용	5,753,968,900	
		문주특화 및 경관조명	198,217,800	
		트랜스퍼 구조보강	0	
		돌출발코니	733,153,100	
		측벽창호	12,550,982	
		테라스 설치	241,260,053	
		저층부마감특화	1,250,544,300	
	기타법령 조례변경	계	354,540,000	
		전기차충전시설	354,540,000	
		소방법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0	
보증수수료	분양보증수수료	644,000,000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에 제시된 설치항목은 평가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및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구분	등급 기준	등급	비고
-----------------	----	----------	----	----

		설치항목(1)	설치항목(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right;">인증번호 제 2025-303-005 호</p>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신청인</td> <td>이름</td> <td>계룡건설산업(주)</td> </tr> <tr> <td>주소</td> <td>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단평동)</td> </tr> <tr> <td rowspan="2">건축물</td> <td>이름</td> <td>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9블록 공동주택</td> </tr> <tr> <td>주소</td> <td>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7(5-1생활권 L9블록)</td> </tr> <tr> <td rowspan="2">인증내용</td> <td>구분</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td> </tr> <tr>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td> </tr> <tr> <td></td> <td>홈네트워크건물</td> <td><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0월 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전과관리소장 </p> </div>	신청인	이름	계룡건설산업(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단평동)	건축물	이름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9블록 공동주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7(5-1생활권 L9블록)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	항목	AA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Cat5e 4페어 이상	영상정보처리기
		신청인	이름	계룡건설산업(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단평동)																			
	건축물	이름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9블록 공동주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7(5-1생활권 L9블록)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준A																			
		AA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가스밸브제어기																		
		AA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조명제어기																		
		AA	통신배관실(TPS)	난방제어기																		
		AA	단지서버실	주동현관통제기																		
		AA	예비전원장치	원격검침전송장치																		
		AA		침입감지기																		
	AA		차량통제기																			
	AA		전자경비시스템																			
	AA		무인택배시스템																			
	AA		일괄소등제어																			
	AA		디지털도어락																			
	AA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AA		현관도어카메라																			
	AA		주차위치인식시스템																			
	AA		환기장치 제어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73,311,600,000	제 06712025-101-0000700 호

■ 분양보증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호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일씨엠	(주)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대경기술단
금액	1,846,473,000원	488,517,545원	454,545,454원	137,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213-81-48856	519-87-01561	120-81-60091	124-81-4781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호	계룡건설산업(주)	(주)원건설산업	(주)동광도시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주)원건설
법인등록번호	160111-0003121	150111-0091235	124411-0206294	160111-0003121	150111-0015889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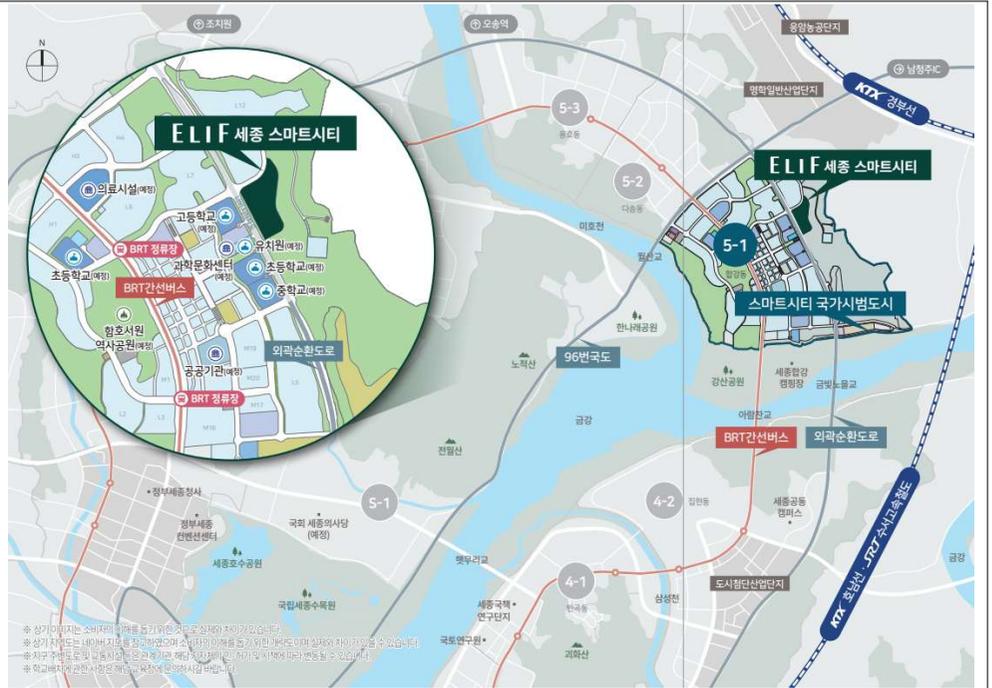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본주택 및 현장위치 안내**

※ 분양문의 : 044-864-5543 (10:00~17:00)

※ 홈페이지 : <http://www.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com>



■ **현장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5101-9번지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 L9BL)

■ **건본주택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23-30

■ **운영시간 : 10:00 ~ 17:00**